2012년 6월 20일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산하 회원 여러분께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기술위원장 이시이 츠네히코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UVA 차단 효과 측정법 기준의 개정에 대해**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UVA 차단 효과 측정법 기준의 개정에 대해” (2012년 6월 20일자 24 장공련 제3호)에 따라 UVA 측정법의 자발적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자발적 기준으로 도입된 ISO24442는 ISO(국제표준화기구)의 IS(국제규격)으로 발행된 것이며, 국제적으로도 이 측정법이 정착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번에 자발적 기준의 개정에 앞서, 아래 사항을 연락 드리므로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아래

1. 1995년 11월 5일자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UVA 차단효과 측정법 기준”(이하, 구 기준이라고 한다)은 UVA 조사 후에 발생하는 피부의 흑화를 지표로 한 측정법으로, 시료도보부와 무도포부에서의 피부 흑화가 인정되는 최소의 자외선량비를 가지고 UVA 차단 효과 지수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 UVA 차단 효과 지수를 “PFA”(Protection Factor of UVA의 약칭)로 표현해 왔지만, ISO24442에서는 이 “PFA”를 “UVAPF” (UVA protection factor of a product의 약칭)로 표현하였으므로, 향후는 UVA 차단 효과 지수를 “PFA”가 아닌 “UVAPF”로 표현하겠습니다.

더불어, “PFA”는 구 기준 중에서 UVA 조사 후 2~4시간에 발생하는 피부 흑화를 지표로 하였지만, “UVAPF”는 ISO에서의 합의에 따라 UVA 조사 후 2~24시간에 발생하는 피부 흑화를 지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2.”PA+”, “PA++” 등을 기재할 경우, 반드시 “SPF”도 기재해야 하지만, 표시 예를 다음에 나타냅니다.

표시 예: SPF10 · PA+ SPF10

PA+

3. 향후 발행된 ISO의 In vivo UVA 측정법은 상술한 구 기준에 기초하여 검토된 측정법이기 때문에, 양자의 측정결과에는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구 기준에서 설정된 표준품의 UVAPF가 3.75 정도이기 때문에, UVAPF가 높은 제품의 경우에는 측정결과에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 기준에서 측정한 결과, UVAPF가 16 이상이었다고 해도, 이 데이터를 토대로 “PA++++”의 표시는 하지 마십시오.

4. “PA+”, “PA++” 등을 기재할 경우, ISO24442에 따라 측정했음을 나타내기 위해, 예를 들면 “ISO24442에 근거하여 측정한 값”으로 추가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단, 추가 기재는 큰 활자로 기재하거나 색조를 바꿔 기재하는 등 강조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 의약품 등 적정광고기준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